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7. 1 제20차 금통위  
개정 1999.11.18 제35차 금통위  
개정 2004. 9. 9 제19차 금통위  
개정 2009. 1.22 제3차 금통위  
개정 2009. 3.26 제8차 금통위  
개정 2010. 1.21 제3차 금통위  
개정 2014. 3.27 제6차 금통위  
개정 2020. 7.17 제16차 금통위  
개정 2020. 9.10 제20차 금통위  
개정 2024. 5. 9 제9차 금통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77조제1항, 제79조 및 제82조에 의거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대상기관)**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3. 법 제79조 단서에 따른 다음의 법인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및 한국거래소
  -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의 여신을 받는 영리기업
4. 법 제8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의 금융기관 중 외국 중앙은행과 CLS은행(CLS Bank International),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 정부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한국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기관

**제3조(예금거래약정)** ① 한국은행은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과 예금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이 법,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및 예금거래약정 등을 위반한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부 칙<1999.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7. 2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 비은행금융중개기관 결정」(1982. 6. 17 제16차 금통운위),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의 추가 결정」(1986. 11. 6 제31차 금통운위),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기관 결정」(1991. 4. 18 제9차 금통운위), 「증권예탁원에 대한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기관 결정」(1995. 11. 2 제24차 금통운위),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의 추가결정」(1996. 11. 21 제24차 금통운위),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기관 결정」(1998. 11. 19 제25차 금통위)은 폐지한다.

**부 칙<1999. 11. 18>**

이 규정은 1999. 11.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9>**

이 규정은 2004.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22>**

이 규정은 2009.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6>**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2월의 범위 내에서 총재가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결제업무팀-601(2009.4.20 총재결재)에 의하여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

**부 칙<2010. 1. 21>**

이 규정은 2010. 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7>**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7>**

이 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0>**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4월의 범위 내에서 총재가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결제정책팀-667(2020.10.5, 총재결재)에 의하여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

부 칙<2024. 5. 9>

이 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